

붙임1.

남강(남강댐)권역(지방하천 등 9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 민 등 의 의 견 수 렴 결 과 및 반 영 여 부)

2019. 03.



국 토 교 통 부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현행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의 수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며, 수계 내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 수립주체 등이 서로 상이하어,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협의·조정애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 남강권역은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남강권역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본 과업의 목적이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 하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으로,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추진경위

- 2012년 05월 :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착수
- 2017년 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2017년 11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17년 11~12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심의)
- 2018년 01.25~02.10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18년 08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18년 08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8년 12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작성 및 협의요청

1.4 사업의 내용

1.4.1 사업명 : 남강(남강댐)권역(지방하천 신등천 등 9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4.2 계획수립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4.3 계획의 범위

- 계획대상지역 : 남강(남강댐)권역 중 지방하천 9개소
- 계 획 구 간 : 90.07km

1.4.4 사업내용

〈표 1-2〉 사업계획 총괄 현황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하천 연장 (km)	제방축제(km)			제방보축(km)			호안계획(km)			배수시설	
			초안	본안	증감	초안	본안	증감	초안	본안	증감	초안/본안	
신등천	171.40	27.00	5.729	3.940	▽1.789	10.223	7.651	▽2.572	-	0.254	△0.254	157	39
도탄천	13.28	4.50	3.627	3.243	▽0.384	-	-	-	-	-	-	19	3
가회천	21.06	10.30	1.719	2.023	△0.304	1.883	1.612	▽0.271	-	-	-	12	7
가솔천	10.29	3.30	2.656	2.753	△0.097	0.690	0.379	▽0.311	-	-	-	55	28
단계천	55.72	22.6	0.787	0.714	▽0.073	5.913	5.893	▽0.02	-	-	-	161	50
남사천	40.04	13.20	6.664	4.540	▽2.124	6.745	7.159	△0.414	-	-	-	86	35
오미천	22.56	9.40	4.716	4.738	△0.022	0.348	0.348	-	-	-	-	29	12
내촌천	11.36	6.30	3.744	3.425	▽0.319	-	-	-	-	-	-	32	9
완사천	34.96	14.50	10.348	10.103	▽0.245	1.480	1.358	▽0.122	-	-	-	54	22
계	380.67	111.1	39.99	35.479	▽4.511	27.282	24.4	▽2.882	-	0.254	△0.254	605	205

〈표 1-2〉 사업계획 총괄 현황(표계속)

하천명	교량(개소)									보/낙차공(개소)							
	현황	초안				본안				현황	초안			본안			
		재가설	존치	철거	신설	재가설	존치	철거	신설		재가설	존치	보강	재가설	존치	보강	철거
신등천	32	30	2	-	-	23	6	3	-	40	9	31	-	11	-	29	-
도탄천	12	12	-	-	-	11	1	-	-	16	14	2	-	6	-	9	1
가회천	22	20	2	-	-	16	6	-	-	23	7	16	-	7	-	15	1
가솔천	13	13	-	-	-	13	-	-	-	14	5	9	-	7	-	7	-
단계천	27	22	5	-	-	19	8	-	-	86	8	78	-	6	8	72	-
남사천	24	21	3	-	-	20	2	1	1	32	17	3	12	11	3	18	-
오미천	18	16	2	-	-	16	1	1	-	11	11	-	-	10	-	-	1
내촌천	15	13	1	1	-	14	-	1	-	18	17	1	-	10	-	6	2
완사천	26	24	2	-	-	24	2	-	-	30	29	1	-	27	-	2	1
계	189	171	17	1	-	156	26	6	1	270	117	141	12	95	11	158	6
증감						▽15	△9	△5	△1					▽22	▽130	△146	△6

1.5 사업의 기대효과

- 수리·수문 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 주변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의 개선을 도모
- 하천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이·치수,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 기본방향 수립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
- 하천변과 유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1 주민의견 수렴개요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을 수렴함

2.1.1 관련주체

- 계획수립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주관 행정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관계 행정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 일간신문 : 서울신문
- 지역신문 : 경남매일
- 주관 행정기관 홈페이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표 2-1> 관련 법규(환경영향평가법)

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3.1 주민의견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합 가 천 회 면	○ 합천군에 있는 천인데 왜 신등천이라고 하는 표기됐는지 모르겠음. 지역이랑 안맞게 이름이 지어져 있으므로 지역에 맞게 이름을 바꿔 주었으면 함.	○ 국가에 등재된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함.	반영
	○ 전체 구간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지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건지 궁금함.	○ 하천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치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고시를 하게 됨. 본 설명회에서는 이 계획대로 공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과정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 반영시 치수나 환경적으로 합리적인지 판단 후 계획에 반영함.	반영
	○ 하천공사시 치수적인 것만 고려하지 하천 생태계라든지 경관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하는 것 같음. ○ 하천에 손을 댈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친환경적인 공법을 쓴다고 하지만 지난해 하천공사 후 물총새가 많이 안보이기 시작함. ○ 제방 둑이 높아지면서 하천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일부 마을에서는 공사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음.	○ 50년 빈도로 홍수량을 산정할 때 보다 80년 빈도로 산정후 홍수량이 증가하여 뚝을 넓히는 방안이나 높이는 방안을 세워야 안전하므로 치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가급적이면 친자연적으로 하고 싶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은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건드리지 않고 불필요한 공사는 지양하고 있음.	반영
	○ 계획만 세우지 말고 공사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는 많이 하는데 실제 공사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길 바람	○ 하천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음.	반영
	○ 하천을 관리하는 곳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지 궁금하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음.	○ 수립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수립후 관리하는 경상남도에서 하게됨. 주민들분의 주신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였음.	반영
	○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되는지 궁금하고, 땅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또한 의견반영이 잘되었으면 좋겠음.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10년단위로 하며, 5년 단위 변경하게 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하였음.	반영
	○ 홍수벽 높이가 너무 높아 경관상 좋지 않다. 홍수벽 좀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음.	○ 제방을 못 쌓거나 하폭을 넓히지 못하는 지역에 홍수벽을 쌓기 때문에 재난상 문제 발생위험이 있기에 철거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반영
	○ 지금 주변에서 하천공사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폭도 많이 늘어났고 홍수량이 충분한 것 같은데 하천청소로도 충분히 홍수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꼭 공사를 해야되는지 궁금함.	○ 예전에는 50년 빈도로 홍수량을 산정 했지만 지금은 80년 빈도로 홍수량을 산정하므로 하천계획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공사는 진행해야함.	반영
	○ 매미때 큰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은 웬찮지만 큰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피해를 예상되고 매미때를 생각해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음.	○ 하천공사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며, 큰비가 왔을 때 홍수를 예방하는 차원이기에 안정적으로 홍수방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하동군	옥 중 면	○ 동네 기준 어디까지가 공사구간인지 알고 싶음.	○ 1005호 지방도 하류부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동군은 전체 구간중 지방도 밑으로 400m까지 설정되어 있음.	반영
		○ 지방도 위쪽에서 토사가 다 밀려오기에 위쪽부터 계획을 잡았으며 좋겠음.	○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나 금회 계획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움.	반영
		○ 제방둑의 넓이는 어느정도이며, 농기계 등이 통과해야 되기에 넓게 해줬으면 함.	○ 국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4미터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 이번 사업의 시기는 언제쯤 인가?	○ 기본계획 수립하면, 지방하천이기에 경상남도에서 여러 지방하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사항이기에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반영
사천시	곤 명 면	○ 이전에 훨씬 비가 많이 와도 범람하지 않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하천폭을 넓히는 이유를 알고 싶음.	○ 예전에는 50년 빈도로 홍수량을 산정 했지만 지금은 80년 빈도로 홍수량을 산정하기에 하천폭이 넓어질수 밖에 없음.	반영
		○ 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치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의 증가는 어려움이 있음	반영
		○ 물푸레나무 등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물푸레나무 뿌리가 물을 정화 시키기에 보호한다고 하는데 멧돼지 등이 거기서 서식하고 있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멧돼지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이점 고려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길 바람.	○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통하여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수립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 기본계획 수립하면, 지방하천이기에 경상남도에서 여러 지방하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사항이기에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반영
산청군	차 황 면	○ 실시할 때 설계를 다시 하실건데 주민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해주시면 좋겠다	○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되며, 그때 또한 충분한 의견제시 가능하고 함.	반영
		○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가 이루어지면 현재 위치한 시설물을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지 궁금함.	○ 각 구간별로 새로 공사하는 구간과 기존시설물을 존치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구간이 있음.	반영
		○ 상류부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상류부에서 농사짓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댐을 신설해주면 좋겠음.	○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과는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나, 관련기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록하겠음.	반영
		○ 신등면은 물이 남아도는데 차황면은 부족한 상황이기에 관로를 설치하여 물이 공급되도록 해주면 좋겠고 저수지도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음.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치수와 이수 측면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주민의견서	조치계획	비고	
산청군	신등면	○ 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는데 하천 하류에 물고기가 상류를 못 올라간다. 어도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	○ 환경부에서는 보 설치시 어도를 설치하게 하고 있으며, 공법선정시 실효성 있는 어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반영
	신안면	○ 하천부지 내에서 농사짓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공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 하천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설계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 기본계획보고서 바탕으로 경상남도에서 각 하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 후 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당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반영
산청군	신안면	○ 농로가 물밑에 있어서 다리를 신설해주면 좋겠음.	○ 새마을 교의 경우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으며, 주민의견에 따라 재검토 하였습니다.	반영
		○ 하천 폭이 넓어지는지 궁금함.	○ 제시한 지역의 현장조사 결과 제방상태가 양호하고 홍수위를 계산했을 시 하폭이 충분하여 보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영
		○ 하상을 긁어내는 하도정비를 해주셨으면 함.	○ 본 계획에서는 하도정비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반영
		○ 기존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도공사만으로도 홍수예방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함.	○ 수위를 낮출수 없을 경우 하상을 걷어내는 경우가 있지만 근례에는 생태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에 하상을 긁어내는 공사는 지양하고 있음.	반영
		○ 하천뚝을 재설정하여 공사를 해주시길 바람.	○ 주민의견을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단상면	○ 물을 막아 놓고 어도를 설치하였지만 고기가 날아오르질 못하는 것 같으며, 낙차 때문에 무용지물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람.	○ 환경부에서는 보 설치시 어도를 설치하게 하고 있으며, 공법선정시 실효성 있는 어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반영
		○ 기본계획만 세우지 말고 공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라며, 주민들이 안전하도록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길 바람.	○ 하천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반영
		○ 하천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음.	○ 수립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수립후 관리하는 경상남도에서 하게되며, 주민들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반영에 큰도움이 됨.	반영
		○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되며, 땅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임.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단위 변경하게 됨.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주민의견서	조치계획	비고	
진주시	수곡면 중전마을 회관	○ 조사가 제대로 묻고 싶고 비가 오면 교량 구조상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 물이 넘실거리는 상황인데 이런 점이 미반영 된걸로 보임. 교량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길 바람	○ 드론으로 하천 평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국토지리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뢰성 있음. 문제의 교량은 실시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 교량, 폭등 변화되는 부분은 현지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점이 있으며, 공사가 필요한부분은 공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은 구간은 과도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함.	○ 국가에서 지방하천계획시 80년 빈도로 홍수량을 산정하기에 하폭등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본 설명은 기본계획이기에 본 계획을 바탕으로 경상남도에서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이루어 질 시에는 상세히 설명이 가능.	반영
		○ 하천하류에 교량이 낮아서 우기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함.	○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해 개수계획에는 홍수량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통해 교량등공사계획을 하고 있음.	반영
		○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공사가 실시하게 된다면 언제쯤 인가	○ 실시설계는 경상남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등 고려하여야 사안이 많기에 공사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움.	반영
	명석면 외율마을 회관	○ 내율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부공장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 확인할 수 있으나, 인근 도내천 구간을 제외한 사유를 알고싶음.	○ 도내천은 소하천에 해당되어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반영
		○ 예산소요량은 얼마나 되는가?	○ 본 계획은 초안이기에 심의과정을 포함해 여러과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에 결정될 것임.	반영
		○ 하천 주변으로 도로와 정온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공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공간은 줄어들어드는데 맞는지 궁금함.	○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의 축소 및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실시설계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반영
		○ 하천에 자라는 나무 등 하도정비가 필요함.	○ 유지관리 등은 경상남도나 진주시 등에서 하천유지관리비로 책정됨.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잘 관리가 안되는 것 같음.	반영
		○ 조속히 하천계획을 수립을 하여 하천정비를 해주기 바라며, 얼마전에 청소를 해보니 쓰레기 등 폐기물량이 상당하였음.	○ 시행 관련된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진행되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잘 집행되지 않는 점이 있음.	반영
		○ 댐안에 흙은 파서 위에 농지에 공급해 줬으면 좋겠음.	○ 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며, 최근에는 하도정비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이루어짐.	반영

2.3.2 관계 행정기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낙동강유역 환경청	1. 총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경남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일원의 총 길이 90.07km의 9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계획이 축제 및 보축 등 치수시설 정비 위주로 수립되어 있는데, 하천의 환경적 기능*(자연성 회복 등)을 유지하면서 치수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식처기능, 통로기능, 공급기능, 여과기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시설물 계획시에는 하천의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친환경공법을 선정하였으며, 보호시설물이 없거나 개수계획으로 침수가 해소되는 면적이 비교적 작은 구간은 경우 홍수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생태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횡적시설물 철거를 검토하는 등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보전 가치가 우수한 공간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계획을 최소화하고 수질, 하천지형,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생태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횡적시설물 철거를 검토하는 등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보전 가치가 우수한 공간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계획을 최소화하고 수질, 하천지형,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기초현황자료 제시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하천회복을 위한 모든 방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하천을 생활권으로 이용하는 동식물상의 생태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별 식생현황 검토를 위한 1:5000 지형도를 기본도면으로 투명지를 이용하여 식생현황도(귀화식물, 교란종 위치 등을 포함) 및 식생보전등급 중첩 제시	- 하천을 생활권으로 이용하는 동식물상의 생태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하천별 식생현황 검토를 위한 1:5000 지형도를 기본도면으로 식생현황도 및 식생보전등급 중첩 제시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낙동강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별 귀화식물, 교란종 현황을 제시하고 도시화 지수를 계산·제시하여 교란 정도에 따른 하천의 등급화 제시 ·법정보호종 서식현황을 생태·자연도(322-330쪽)에 중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별 귀화식물, 교란종 현황 및 도시화지수를 계산·제시하여 교란 정도에 따른 하천의 등급화 제시하였음. ·법정보호종 서식현황을 생태·자연도에 중첩 제시하였음. 	반영
	<p>◎ 하천 생태계 기능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하천구간 중 합류부, 저수역, 별도관리 지역, 식생보전Ⅲ등급지, 생태·자연도1등급지는 육수환경 보전측면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은 사업시기에 따른 서식동물의 생활사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을 분석하고 수변식생 원형보존, 횡적시설물(보, 낙차공 등) 철거 등과 같은 차별화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저감 및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합류부 : 신등천(양천, 가솔천, 가회천, 단계천), 남강(남사천, 오미천, 내촌천, 완사천), 남사천(입석천), 오미천(실미천), 완사천(마곡천, 성방천) · 저수역 : 가회천(대기저수지), 단계천(울현저수지) · 별도관리지역: 가회천 · 식생보전Ⅲ등급지 : 신등천, 도탄천, 가회천, 가솔천, 단계천, 남사천, 오미천, 내촌천, 완사천 · 생태·자연도1등급지 : 신등천-양천 합류부, 오미천, 내촌천 · 현재의 하천 굴곡성 및 구배를 유지하고 생태적 기능이 활발한 하천의 합류지점은 하천의 자연적인 연속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은 사업시기에 따른 서식동물의 생활사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수변식생 원형보존, 횡적시설물(보, 낙차공 등) 철거, 여울형 보, 어도설치, 생태통로 설치 등 가능한 저감 및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p>· 현재의 하천 굴곡성 및 구배를 유지하고 생태적 기능이 활발한 하천의 합류지점은 하천의 자연적인 연속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음.</p>	반영
	<p>◎ 보 및 낙차공 등 시설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에서는 보 및 낙차공이 283개소 운영 중임에도 시설물 현황(측점, 형식)만 제시되었을 뿐 시설물의 기능적 현황은 검토되지 않고, 재가설 117개소 및 보강 12개소를 계획한 바 하천의 연속성과 수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하천의 환경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경사가 완만한 구간에 대해 현재 계획된 보 및 낙차구조물은 추가적인 수리검토를 통해 철거가능 구조물은 추가적인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가설 되거나 보강되는 구조물에 대해 하천의 연속성과 수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사 여울형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낙동강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낙차공 또는 보는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저해를 야기하여 하천생태계의 확립화 및 생태네트워크 교란을 초래하므로 설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및 낙차공 구조물은 하천의 종적인 생태네트워크를 저해하는 가장 큰 구조물이므로 교란의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여 치수 및 이수적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태네트워크 교란을 최소화하고 재가설 되거나 보강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천의 연속성과수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도 및 환경사 어울형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하천 연속체 기능을 저해하는 횡적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시설물 기능성 및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를 우선으로 하되, 신설 및 재가설 필요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보 및 낙차공의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존치 여부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1km당 1개 이하의 규모로 계획 수립을 적극 고려하여 존치 및 재가설을 최소화한 결과 제시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유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하천역에는 하상의 준위를 낮추고 소(罅)를 형성하여 좁으로써 인공적 구조물의 보강 및 재가설을 억제토록 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 · 불가피하게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단차 어울형 등 육수생물상의 분포구배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생태적 기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어도설치를 최소화 · 어도설치 시 서식 어류의 생활사를 고려한 어도설치 계획 수립 ※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침서」(환경부, 2011) 219-227쪽 참조 ※ 「2017년도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례집」(환경부, 2017) [부록2] 어울과 소, 어도 설계시 고려사항과 기술검토 기준(45-51쪽)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및 낙차공 경우 신설 계획은 금회 수립하지 않았으며, 재가설이나 보강계획인 수립된 구조물의 경우 유속, 소류력 등 수리적인 특성과 이수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구조물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겠으며, 비교적 완만한 구간에서는 하천수 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음. ○ 현재 구조물이 불가피하게 보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육수생물상의 분포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실시설계 수립시에 검토하도록 하였음. ○ 또한, 생태적인 기법을 호안계획 등에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어도설치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음. ○ 어도 설치시에는 계획구간에 조사된 어류의 우점종을 검토하여, 이동 능력 등 어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굴곡성 및 구배를 유지하고, 연속성과 자연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확보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계획에서는 인공적인 직강화 하도 계획을 배제하고 인위적인 하도정비 계획을 지양하여, 기존 하천 형상과 하도정사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낙동강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및 호안의 사면경사는 현재 하천 지형에 순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완만하게 계획(1:2.0 이상)하고, 수변부에 다양한 식물 군락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및 호안의 사면경사는 현재 하천 지형에 순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완만하게 계획(1:2.0 이상)하고, 수변부에 다양한 식물 군락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p>◎ 하천생태 및 법정보호종을 고려한 정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를 통해 수달, 삵, 원앙, 흰목물떼새 등의 수변 및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법정 보호종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수변-산림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흰목물떼새의 번식 여부를 검토하고 번식이 확인되었을 경우 번식기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번식지 원형 보존을 위한 구역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를 통해 수달, 삵, 원앙, 흰목물떼새 등의 수변 및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법정 보호종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수변-산림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음. · 흰목물떼새의 번식 여부를 검토하고 번식이 확인되었을 경우 번식기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번식지 원형 보존을 위한 구역으로 명시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역의 정비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서식생물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이를 일정기간별로 (격월제 또는 계절별)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하천의 현재의 하천자연도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서식생물의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설계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천화 현상을 보이는 하천 구간의 정비는 갈수기를 활용하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연중 수량을 유지하는 하천은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시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천화된 하천은 공사시 갈수기를 이용하고, 연중 일정한 수량이 유지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기를 가급적 피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현·서식이 확인된 다양한 법정보호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현·서식이 확인된 다양한 법정보호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반영하였음. 	반영
	<p>◎ 다양한 수변 식물 보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부에 다양한 식물 군락은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부에 다양한 식물 군락은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귀화식물, 생태계 교란 식물종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제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식물, 생태계 교란 식물종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제거 및 관리방안 제시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낙동강유역 환경청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양호한 하천지형 보호방안 - 본 계획구간 중 주변 지형의 형성과 함께 발달한 자연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은 하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자연형이 우세한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하천 고유의 자연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하천자연도 조사결과 사행 구간 등 자연성이 유지되었거나 자연형 우세지역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모래톱, 자갈 우세지역(특히 왕자갈 분포지역)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거나 중요한 역사문화적 배경이 있는 지역 ·하천의 토사는 자연환경상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도 있으므로 치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 검토 ·사행으로 인해 자연성이 유지된 구간의 자연성 유지 여부 검토 필요	- 본 계획구간 중 주변 지형의 형성과 함께 발달한 자연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은 하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자연형이 우세한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제외하는 보전지구로 지정하는 등 하천 고유의 자연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반영
	◎ 준설계획의 조정 - 준설로 인해 자연적 모래톱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구성요소인 자연지형의 변화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경우에는 준설계획을 조정하여야 함 - 상하류 지역 유로에서 일정 구간 이내에서는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 - 해당 수계 전체 토사량의 일정량 이하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	○ 금회 기본계획시에는 인위적인 하도정비로 인한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일정 구간 내에 동시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 개의 유로상에서 일정구간 이내에서는 동시에 하천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실시계획시 공사계획을 하겠음. ○ 하천공사시 토사량의 일정량 이하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토공처리계획 -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공(성토 또는 사토)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토공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토석공유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 활용	○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유출량 등은 향후 실시계획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겠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토공량을 산정하여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낙동강 유역환경청	·주변에 계획 중인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활용하여 토량수급 또는 사토처리와 관련한 토량이동이 사업기간 중에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 ·인근지역 건설공사나 농경지 객토 등과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향후, 실시설계시 토석공유시스템 등 주변에 계획중인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활용하여 인근지역의 건설공사 등 각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토공유용계획 및 사토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3) 수환경의 보전 ◎ 수질보전 계획 수립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5,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의 수질오염원과 수질오염 취약지역,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환경부의 수질 목표 등급을 고려하여 하천환경 목표등급을 설정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임시적 또는 항구적인 수질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5,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의 수질오염원과 수질오염 취약지역,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환경부의 수질 목표 등급을 고려하여 하천환경 목표등급을 설정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임시적 또는 항구적인 수질개선책을 마련하였음	반영
	- 이에 남강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71호)”을 참조하여 계획하천별 수질을 유지·보전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적용 법정기간(향후 10년) 중 목표수질(430쪽)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남강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71호)”을 참조하여 계획하천별 수질을 유지·보전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적용 법정기간(향후 10년) 중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보전 방안을 마련하였음.	반영
	- 가장 인접한 중권역의 수질목표기준 및 현재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천의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 최소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가장 인접한 중권역의 수질목표기준 및 현재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천의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 최소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였음.	반영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재해의 예방, 대응, 복구를 총괄하는 계획으로서 지역방재의 근간이 되는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위 관련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계획하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금회 시설물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금회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중인 개수지구 및 시설물 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부합여부 및 연계성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 풍수해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금회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낙동강 유역환경청	<p>◎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호안 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의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농경지, 가옥 등)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홍수관리 구역 지정, 천변저류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하천내에서 자연습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식생저류지 등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및 보축계획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환경사 식생호안을 적용하였으며, 보호 시설물이 없거나 개수계획으로 침수가 해소되는 면적이 비교적 작은 구간의 경우 홍수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음. 홍수관리구역 추가 지정 및 천변저류지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 하겠음. 	반영
	<p>◎ 계획홍수량 산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별 기수립 대비 급회 계획홍수량의 증가 (498 ~ 503쪽)요인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바, 계획 하천별 홍수량 증가 원인을 분석·제시하여 계획 홍수량 산정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홍수량 증가 원인으로 계획빈도 상향 (50년 → 80년 빈도), 확률강우량 증가,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CN 값 증가 요인 등이 있으며, 각 하천별 홍수량 산정 비교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p>◎ 적정규모의 사업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은 기왕 홍수피해 이력과 원인 분석을 통해 계획하천유역이 갖는 강우와 홍수 등 수문량의 크기 및 빈도, 홍수 잠재 피해능에 따라 상위 치수계획에 부합함과 동시에 하천의 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무제부 홍수위 이하 구간은 제방계획으로 보호시설물이 없거나 개수계획으로 침수가 해되는 면적이 비교적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음. ○ 급회 개수계획 수립시 보 및 낙차공의 경우 신설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재가설로 계획된 보 및 낙차공에 경우, 하상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는 유속, 소류력 등의 수리적 특성 및 농업용수 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재가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도설치 및 환경사 여울형 시설물로 계획하였음. ○ 계획하폭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범위를 검토하고 하천현황 및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하폭을 결정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홍수소통 및 배제 등 홍수방어와 같이 하천의 일차적인 기능에 편중하여 총 하천연장 111.1km 구간에 대해 축제 L=34.0km, 보축 L=27.3 km, 교량 재가설 171개소 등 상당 규모의 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제시(28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제방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시설,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과 복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에 한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과도한 하폭확장은 축제 및 횡적구조물의 재가설을 수반하고,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하폭확장을 계획하기보다는 기존 제방 상태, 하천시설물, 토지이용 현황, 지형·지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적정 계획하폭을 결정하여야 함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p>낙동강 유역환경청</p>	<p>1) 자료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과업구간에 대해 기수립 당시의 축제, 보축 등의 개수계획 및 동 계획의 실시(공사) 여부를 조사·제시 · 계획하천별 개수율은 총 연장에 대한 완전개수, 불안전개수, 미개수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제시 · 최고 수위를 기록했던 2007년 당시(443쪽) 강우의 재현빈도 및 홍수피해 이력을 조사·제시 · 계획하천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제방 보축 및 축제(하도 정비 포함)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가옥, 농경지, 도로 등) 등을 조사·제시 · 축점별 개수 전·후의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과부족 검토결과를 제시하고, 동 자료에 제방 계획 수립구간을 표기 ·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수 전·후의 홍수위를 비교·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구간에 대한 하천공사이력을 검토하여 수록하였음 ○ 과업하천에 대한 개수율을 조사하여 수록하도록 하였음 ○ 2007년 발생한 강우 사상에 대하여 홍수 원인 및 피해현황, 발생빈도를 검토하여 수록하였음. ○ 과업하천에 대한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을 제시하고, 금회 계획된 제방 축조구간에 대한 보호면적과 시설물 현황을 검토하여 수록하였음 ○ 개수전·후에 대한 홍수위 비교 및 여유고 검토 비교표 수록하고 해당축점에 대한 계획구간을 표기하였음. ○ 개수전·후의 홍수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p>반영</p>
	<p>2) 검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기준(홍수량 크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치수계획 수립을 지양 · 우수한 산림역(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137쪽)과 연계된 하천구간은 확폭 및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필요시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을 우선 검토 ·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고가지 않거나 현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현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 제방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의 면적이 작거나 시설제방의 여유고가 미미한 수준일 경우, 율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제방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 · 독마루폭 부족에 따라 보축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방 안전성과 중요도, 제내지의 상황, 독마루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축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구간의 확폭계획이나 보축계획은 지양하고 제방계획으로 인한 보호시설물이 없거나 침수가 해소되는 면적이 비교적 작은 구간은 홍수관리구역으로 계획하였음. ○ 우수한 산림역에 해당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은 대부분 산지 지형으로 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구간이므로 시설물 계획을 지양하였음. ○ 제방계획 수립시 여유고 부족이 크지 않은 구간은 보축지구로 계획하여 현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방계획으로 인한 보호시설물이 없거나 침수가 해소되는 면적이 비교적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였음. 	<p>반영</p>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p>낙동강 유역환경청</p>	<p>◎ 교량 존치방안 검토 - 교량 능력 검토(565~569쪽) 시 교량연장이 충분한 경우 경간장과 여유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수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p>	<p>○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교량 능력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교량 경간장과 여유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계획으로 재검토 하였음.</p>	<p>반영</p>
	<p>◎ 수질오염총량 검토 - 총량검토에 대한 개발부하량의 구체적 산정자료가 미제시되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산정자료(근거자료 포함)를 제시하여야 함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295호)」 제29조 규정에 따라 사업내역(배출부하량, 삭감부하량 등)을 수질오염총량시스템에 등록하고 협의 내용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p>	<p>-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산정자료(근거자료 포함)를 부록에 수록하였음. - 협의내용 관련하여 총량할당공문 및 할당연기계획서의 적정성 통보공문을 본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였음.</p>	<p>반영</p>
	<p>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관리목표 설정 - 금회 하천시설물 계획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성상·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 관리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관리목표 설정 시 「자원순환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연관계획 및 해당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감량 목표를 설정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설정 관리목표를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p>	<p>- 금회 하천시설물 계획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실시계획시 산정되고, 자원순환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연관계획 및 해당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감량 목표 등의 폐기물 관리목표(%)를 설정하였음.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설정 관리목표를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겠음.</p>	<p>반영</p>
	<p>2) 소음·진동 ◎ 공사소음 관리계획 수립 - 공사소음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작업시간 제한을 적용(639쪽)하고 있으나, 정온시설 중 교육시설 및 사육시설의 경우 작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음환경목표기준이 상향되어 학생 및 가축에 대한 소음피해가 우려되므로, 환경목표기준을 정온시설에 적합하도록 설정하고 작업시간 제한을 제외한다 다른 공사소음 관리계획(저소음 장비 및 공법 적용, 가설방음판넬 높이</p>	<p>-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교육시설 및 사육시설의 경우 작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음환경목표기준이 상향되어 학생 및 가축에 대한 소음피해가 우려되므로, 환경목표기준에 적합하도록 공사가 이루어지는 인근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민원발생 시 추가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음.</p>	<p>반영</p>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낙동강 유역환경청	상향 조정, 추가 방음시설 설치, 관리인력 운영, 모니터링 계획, 소음자동측정기 운영,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 등)을 수립하여야 함		
	<p>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p> <p>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p>◎ 환경민감지역 보전</p> <p>- 하천공간 관리구역 설정 및 제시 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하천내 습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하천구역은 하천지구 구분도에 중첩하여 표시하고 보전지구로 설정하여야 함</p> <p>·상기 지역에 인접한 소하천 중 현재 보 및 낙차공이 과도하게 조성되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거를 유도하여야 함</p>	<p>- 하천공간 관리구역 설정 및 제시 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하천내 습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하천구역은 하천지구 구분도에 중첩하여 표시하였으며, 보전지구로 설정하였음.</p> <p>·상기 지역에 인접한 소하천 중 현재 보 및 낙차공이 과도하게 조성되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거를 유도하였음.</p>	반영
	<p>◎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과의 부합성 검토</p> <p>-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및 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구역 및 토지이용 계획 설정 시 검토결과 반영·제시하여야 함</p>	<p>-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및 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구역 및 토지이용 계획 설정 시 검토결과 반영·제시하여야 함</p>	반영
	<p>라. 기타</p> <p>- 지역 전문가, 주민 또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해당내용과 반영결과를 제시하여야 함</p> <p>- 하천 지구 구분 결과는 지도, 현황, 공간관리계획을 가독성 있는 자료로 제시하여야 함</p>	<p>- 주민설명회 및 공공공람을 통해 전문가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으며, 반영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미반영시 미반영사유를 제시하였음.</p> <p>- 하천 지구 구분 결과는 지도, 현황, 공간관리계획도를 본안보고서 토지이용파트에 수록하였음.</p>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 유역환경청	<p>2. 귀 청에서 검토 요청한 ‘남강(남강댐)권역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p> <p>가. 가장 인접한 중권역의 수질목표기준 및 현재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천의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 최소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p>	<p>-</p> <p>가. 가장 인접한 중권역의 수질목표기준 및 현재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천의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 최소화 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였음.</p>	반영
	<p>나. 하천의 굴곡성 및 구배를 유지하고, 연속성과 자연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확보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축제 및 호안의 사면경사는 현재 하천 지형에 순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완만하게 계획(1:2.0 이상)하고, 수변부에 다양한 식물 군락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계획에 반영.</p>	<p>나. 하천의 굴곡성 및 구배를 유지하고, 연속성과 자연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확보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p> <p>○ 축제 및 호안의 사면경사는 현재 하천 지형에 순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완만하게 계획(1:2.0 이상)하고, 수변부에 다양한 식물 군락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음.</p>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경상남도	- 자연환경 ○ 사업계획지역 지형훼손 및 주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사업계획지역 지형훼손 및 주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 계획 수립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권역별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 계획 수립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권역별 해당 기준을 고려하였음.	반영
	○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인·허가 등을 한 경우 20일 이내에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실시설계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될 경우 승인시 20일 이내에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반영
	○ 문헌 및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문헌 및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 향후 사업시행 전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여부에 대하여 법적 검토사항 외 추가적인 면밀한 검토(지역 환경전문가 의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서식 여부 확인)를 하여 서식지 등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시 주변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영향여부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멸종 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속한 조치 및 서식지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향후 사업시행 전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등 훼손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사업 시행시 주변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영향여부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인원 교육을 통해 멸종 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속한 조치 및 서식지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	반영
	○ 사업시행시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에 생태계교란생물의 유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과정에서 인위적인 확산과 식생변화 예방을 위한 사전제거관리 대책이 검토되어야 함.	○ 사업시행시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에 생태계교란생물의 유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검토 제시하였음.	반영
	○ 하천 정비과정에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여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특히 어류 등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 정비과정에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어류 등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경상남도	○ 사업시행시 사업계획지 및 주변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사업시행 전·후 주변 서식지 변화, 영향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별도의 저감·보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 시행시 사업계획지 및 주변 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사업시행 전·후 주변 서식지 변화, 영향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별도의 저감·보전 대책을 수립·시행 하겠음.	반영
	- 폐기물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할 시군 폐기물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처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할 시군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	반영
	○ 훼손대상 임목에 대해서는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하며 임목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 하여야 함.	○ 훼손대상 임목에 대해서는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임목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 기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녹색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녹색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원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실시 설계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원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협의과정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저감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 공사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협의과정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저감될 수 있도록 예방 조치하겠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사천시	-. 자연환경보전 ○ 주변 농경지, 임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접근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천 사면부는 완경사로 계획하고, 자연석을 이용한 석축 등 주변경관과 조화유지 필요	○ 주변 농경지, 임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접근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천 사면부는 완경사로 계획하였으며, 자연석을 이용한 석축 등 주변경관과 조화유지 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수환경 보전 ○ 사업예정지 완사천은 경상남도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단위유역중 남강C유역에 위치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협의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 완사천은 경상남도 낙동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단위유역중 남강C유역에 위치하여 총량할당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할당연기계획서의 적정성을 통보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안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 완사천 하류(완사천 종점부 하류, 진양호 홍수만수위선)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에서 수면을 관리하고 있으나 제방이 없어 강우로 인해 완사천 유량 증가시 사면부 토양침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운반된 토사류와 하천변의 낙엽, 잡목류가 유속이 느린 진양호 상류부에 지속적으로 퇴적되고 수질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붙임 사진) 따라서 완사천 하류(완사천 종점부 하류, 진양호 홍수만수위선) 6.5km 구간은 관리청에서 별도 하천 사면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양침식 예방 필요	○ 완사천 종점부~진양호 홍수만수위선 6.5km 구간은 남강댐 수몰지 구간으로 남강(국가하천)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금회 완사천의 과업범위에서 제외되었음. 추후, 남강(국가하천)의 관리청에서 별도 하천 사면부 정비계획이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반영
	-. 생활환경 보전 ○ 사업시행시 토사 반입/반출이 있는 노선구간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 등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시행시 토사 반입/반출이 있는 노선구간은 토사운반차량의 저속운행, 차량덮개설치, 진입로 살수시설 설치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반영
진주시	-. 수계관리 ○ 동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의거 오염총량할당대상 사업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지역개발부하량을 산정하여 개발부하량을 할당을 받아야 하므로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 할다에 따른 협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으로 진주시와 협의 후 총량할당을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안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하동군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 본 건은 남강권역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남강권역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남강(남강댐)권역(지방하천 신등천 등 9개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임</p> <p>-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작성체계, 세부평가항목 등)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p>	<p>-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작성체계, 세부평가항목 등)에 따라 작성·제출하겠음.</p>	반영
	<p>○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의 협의의견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결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p>	<p>○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의 협의의견을 준수하며, 사업시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겠음.</p>	반영
	<p><input type="checkbox"/> 세부검토의견</p> <p>1. 계획의 적정성</p> <p>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p> <p>○ 본 계획과 연관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남강하천기본계획 등의 상위·관련계획(수립중인 계획포함) 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p>○ 본 계획과 연관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남강하천기본계획 등의 상위·관련계획(수립중인 계획포함)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을 검토·제시 하였음.</p>	반영
	<p>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절성</p> <p>○ 대안 선정 시 Action/No Action뿐만 아니라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노선) 등의 대안을 추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p> <p>- 각 대안에 대하여 상위·연관계획과의 상충·부합여부를 검토·제시</p>	<p>○ 대안 선정 시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추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p> <p>- 각대안에 대하여 상위·연관계획과의 상충·부합여부를 검토·제시 하였음.</p>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하동군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문헌 및 현지조사결과 금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범정보호종(수달, 삿, 원앙, 붉은배새매, 새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등) 이 조사된 바, 중 활동이 왕성한 시기, 주요이동경로 및 주서식지 등을 추가 현지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식지 보전 및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수립·제시 하여야 함	○ 문헌 및 현지조사결과 금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범정보호종(수달, 삿, 원앙, 붉은배새매, 새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등) 이 조사된 바, 이를 토대로 서식지 보전 및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수립·제시 하였음.	반영
	2)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조망점에 대하여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함 - 특히, 보축과 축제, 교량, 보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경관영향을 예측하여 우려한 남강천의 경관보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조망점에 대하여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제시하였음. - 특히, 보축과 축제, 교량, 보를 계획하고 있는 구간중 대표성을 갖는 구간에 대해 경관영향을 예측하여 경관보존과 주변지역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2) 수자원의 보존 ○ 본 계획을 추진할 경우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바 우기(6~9월)에는 가급적 공사를 지양하고,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본 안에서 제시한 면적 및 용량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또한 공사완료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해 비점오염원이 증가될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등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함. - 아울러, 본 사업지역은 남강C 수질오염총량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바,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오염총량 부하량을 할당받아 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하여야 함	○ 본 계획을 추진할 경우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바 우기시 공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공사지점 하단부에 침사지 및 오탉방지막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음. - 공사완료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해 종합적인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겠음. - 본 사업지역은 남강C 수질오염총량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오염총량 부하량을 할당받았으며,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하동군	<p>나. 생활환경의 안정성</p> <p>1) 환경기준의 부합성</p> <p>○ 사업 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원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걱정 저감방안을 마련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p>	<p>나. 생활환경의 안정성</p> <p>1) 환경기준의 부합성</p> <p>○ 사업 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원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걱정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p>	반영
	<p>○ 사업 시행 시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의한 피해 여부를 예측한 후 걱정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특히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면 소음발생 장비를 분산투입하는 등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p>	<p>○ 사업 시행 시 사업지구 주변 정온 시설에 대한 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의한 피해여부를 예측한 후 가설방음판넬설치, 장비 분산투입, 둔덕을 이용한 작업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음.</p>	반영
	<p>2)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 <p>○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 규정한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함</p>	<p>○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폐기물은 관할 시군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p>	반영
	<p>○ 동 사업 추진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순환 골재 의무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함.</p>	<p>○ 본 사업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 폐기물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p>	반영
<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녹색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함.</p>	<p>○ 건설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겠음.</p>	반영	
합천군	<p>◎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하여 계획홍수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해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의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개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 및 경관개선 등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p>	<p>◎ 축제 및 보축계획 등으로 인한 토공작업으로 절토와 성토가 발생하며 강우에 의한 하천의 탁도 증가, 하상의 토사퇴적 등으로 육수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상되어 오탉방지막 설치, 침사지설치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유토사 확산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p>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합천군	<p>축제 및 보축계획 등으로 인한 토공사 업으로 절토와 성토가 발생하며 강우에 의한 하천의 탁도 증가, 하상의 토사 퇴적 등으로 육수 생태계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예상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유토사 확산 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금회 계획시 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 하였음.</p>		